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종합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

관계기관 주엽초등학교

내 용

1.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절차 부적정

「초·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제3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국·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2조의2(운영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의 선출 등), 「경기도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경기도교육청 학부모시민협력과)」에 따르면 공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문에 따라 학부모 중에서 정해진 기간에 입후보로 등록한 자를 대상으로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주엽초등학교에서는 2022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아래 [표1]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입후보 등록 기간을 경과한 시점에 입후보자로 등록한 자 2명을 학부모위원으로 선출하여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을 부적정하게 선출한 사실이 있다.

[표1] 2022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절차 부적정 현황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 기간(공고사항)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명단	입후보자 등록 일자	당선 여부	비고
2022. 3. 3.~2022. 3. 7.	○○○	2022. 3. 11.	당선	등록기간 초과
	○○○	2022. 3. 11.	당선	등록기간 초과

2.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안내 및 공개 지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2(회의소집), 「경기도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경기도교육청 학부모시민협력과)에 따르면 공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리고, 회의 개최 전까지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그런데 주엽초등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

- (1) 아래 [표2]와 같이 2022학년도 제1회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4일 전에 각 위원에게 알린 사실이 있으며,
- (2) 아래 [표3]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의 개최 사실을 회의 개최 이후에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실이 있다.

[표2]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안내 지연 현황

학교운영위원회 회기	개최일 (A)	통보기한 (B) ※개최 7일 전	통보일 (C)	지연일수 (C-B)	비고
2022학년도 제1회	2022. 4. 5.	2022. 3. 29.	2022. 4. 1.	4일	

[표3]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사실 홈페이지 공개 지연 현황

학교운영위원회 회기	개최일 (A)	공개일 (B)	지연일수 (B-A)	비고
2022학년도 제1회	2022. 4. 5.	2022. 4. 8.	3일	
2022학년도 제2회	2022. 6. 10.	2022. 6. 16.	6일	
2022학년도 제3회	2022. 7. 19.	2022. 7. 26.	7일	

【조치할 사항】

- ① 주엽초등학교장은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② 관련자에게 ‘주의’ 처분합니다.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종합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교육공무직원 채용업무 부적정
관계기관 주엽초등학교
내 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교에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과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 규정」 제13조(결격사유) 및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규칙」에 따르면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주엽초등학교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결격사유를 조회하지 않고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한 사실이 있다.

[표] 교육공무직원 결격사유 미조회 현황

연번	직종	성명	임용기간		결격사유 조회 여부		비고
					성범죄 경력조회일	아동학대 전력조회일	
1	초등보육전담사	○○○	2021.10.21.	현재			미실시
2	조리실무사	○○○	2020.09.21.	2022.02.28.			미실시
3	조리실무사	○○○	2022.03.18.	2022.03.18.			미실시
4	조리실무사	○○○	2022.03.23.	2022.03.23.			미실시
5	조리실무사	○○○	2022.03.16.	2022.03.16.			미실시
6	조리실무사	○○○	2022.03.22.	2022.03.22.			미실시
7	조리실무사	○○○	2022.02.23.	2022.02.28.			미실시
8	조리실무사	○○○	2021.11.18.	2021.11.19.			미실시
9	조리실무사	○○○	2021.09.24.	2021.09.24.			미실시
10	조리실무사	○○○	2021.04.13.	2021.04.19.			미실시

【조치할 사항】

- ① 주엽초등학교장은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② 관련자에게 ‘주의’ 처분합니다.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

종합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 주엽초등학교

내 용

1. 용역 손해배상공제증서 미징구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 및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제4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에 따르면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 시 손해배상 보험증서 또는 공제 증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주엽초등학교에서는 [표1]과 같이 계약상대자로부터 손해배상공제 증서를 제출받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1] 용역 손해배상공제증서 미징구 내역

건명	계약일	계약금액	착수일	완수일	공제증서
석면제거사업 감리용역	2021.10.29.	21,648,000	2022.01.07.	2022.02.04.	미징구

2. 계약변경에 따른 계약보증서 추가 징구 미실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계약보증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보증보험증권등의 보증기간의 연장)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체결일을 연기하거나 계약의 이행기간 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당초의 보증기간 내에 연장하려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주엽초등학교에서는 [표2]와 같이 공사변경계약에 따른 보증금 추가 확보 및 보증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2] 계약변경에 따른 계약보증서 추가 징구 미실시 현황

(단위: 원)

공사명	당초		변경		계약보증		비고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기간	보증금액	보증기간	
주엽초 무석면텍스 설치 공사	152,405,370	2021.11.05. ~2022.02.04	157,343,810	2021.11.05. ~2022.02.18	22,860,806	2021.11.05. ~2022.02.04	계약금액 증가 및 계약기간 연장

【조치할 사항】

- ① 주엽초등학교장은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② 관련자에게 ‘주의’ 처분합니다.